#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99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9.

발 의 자: 박지원·김용민·전용기

이성윤 • 서영교 • 문진석

임미애 • 박균택 • 정진욱

부승찬 • 장철민 • 장경태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·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되,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,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도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라는 요건이 지나 치게 엄격하여 입법부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을 곤란하 게 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투명성 감시라는 국회의 기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,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는 요건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에서 국회재적의원 과 반수의 찬성의결로 완화함으로써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원활 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4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##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4항제1호 중 "3분의 2 이상의"를 "과반수의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)	제17조(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	4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
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	
서 열람,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	
을 허용하며, 다른 법률에 따른	
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	
되지 아니한다.	,
1. 국회재적의원 <u>3분의 2 이상</u>	1 <u>과반수의</u>
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	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